
**2010년 방송평가
내용 / 편성 / 운영 영역
평가척도 세부기준**

2010년도

편성평가정책과

목 차 |

□ 내용영역

1. 프로그램 질 평가	1
2.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2
3. 자체심의 운영실적	4
4. 시청자불만처리의 적절성	6
5.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10
6. 시청자위원회	13
7.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14

□ 편성영역

8.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15
9. 지역방송사 자체제작비율	17
10.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19
11.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	20
12.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21
13.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편성	23
14. 직접제작 ·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24
15.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26
16.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28
17. 재난방송 편성 및 실시	30

목 차 II

□ 운영영역

18. 경영의 적정성	32
19. 재무의 건정성	33
20. 자회사(계열사) 평가결과 활용의 적정성	35
21. 인적자원 개발 투자	36
22. 방송기술 투자	38
23. 공정거래 준수	40
24. 방송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41
25. 장애인 고용	42
26. 여성 고용	44
27.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운영 여부	46
28. 수신료 배분의 적정성	55
29. 채널공급계약시 선정기준 적정성	56
30. 상품 선정기준의 적정성	57

프로그램 질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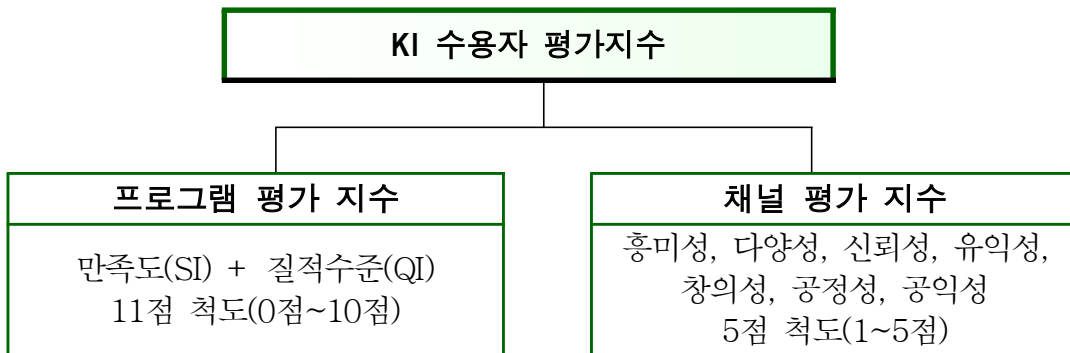
1. 평가척도

평가항목	평가척도
프로그램 질 평가	※ 평가대상 : 자체편성 50% 이상인 종합편성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사업자 - 수용자평가조사에 의한 프로그램 질 평가

2. 세부기준

가. 기본원칙

- KI 수용자 평가 지수는 '프로그램 평가 지수', '채널 평가 지수' 등 2가지 지수로 구성.
- ※ '프로그램 평가 지수', '채널 성과 지수'는 시청자 설문조사를 통해 결과를 산출함.



나. 평가점수 산정기준

- 2가지 지수로 구성된 『KI 수용자 평가 지수』, 즉 '프로그램 평가지수', '채널성과지수' 가운데 '프로그램 평가 지수'의 조사결과만 방송평가에 반영함.
- 프로그램 평가지수는 11점 척도(0~10점)의 '질 평가척도(QI : Quality Index)'와 '만족도 평가척도(SI : Satisfaction Index)'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종 평가점수는 이 두 척도의 측정값을 합산, 평균하여 산출함.

다. 배점 방식

- 10점 만점(11점 척도) 원점수를 '수용자평가 항목' 배점(70점) 비율로 환산하여 반영함.
 환산점수 = 70×원점수/10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1. 평가척도

평가항목	평가척도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 수상횟수 및 시상기관에 따른 종합 평가

2. 세부기준

가. 평가기간

- 시상일을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나. 수상실적 인정범위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대상(대상, 지역발전·문화다양성·사회공헌·창의발전·뉴미디어·시청자제작 프로그램상, 공로상) 등에 대한 수상실적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등에 대한 수상실적
- 방송유관단체
 - 전국규모의 방송유관단체에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시상제도로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연간 및 분기, 월간 단위의 방송프로그램 및 개인(제작부문에 한함)에 대한 수상실적
- 시청자단체
 - 위원회가 인정하는 시청자단체에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전문 시상제도로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연간 및 분기, 월간 단위의 방송프로그램 및 개인(제작부문에 한함)에 대한 수상실적
- 기 타
 - 위원회가 인정하는 해외 우수 방송프로그램 시상제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송프로그램 시상제도

- 명망있는 언론단체의 방송프로그램 시상제도
-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프로그램 시상제도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자체제작이 50%미만인 방송사업자의 경우 자체제작 프로그램 수상실적에 대해서는 해당 수상실적 점수의 50%를 가산하여 반영함.
- 자체제작이 아닌 타 방송사의 우수 프로그램을 방송하여 수상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상실적 점수의 50%를 반영함.
- 동일한 프로그램이 다수의 시상주체로부터 수상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수상실적 점수 1회만 인정함.
- 개인상 부문을 포함함.(단, 제작부문에 한함)

라. 배점 방식

- 대상 프로그램 및 수상기간에 따른 원칙에 의거하여 배점함.
 - 전체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수상실적은 개별 장르에 한정된 수상실적에 우선함.
 - 연간단위의 수상실적은 분기 및 월간단위의 수상실적에 우선함.
- 매체별(지상파TV / R / 음악FM / SO·위성)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최고점을 기준으로 9등급으로 나누어 배점함.

평가등급의 비율 (9등급)	평가점수		
	지상파 TV/R(30)	음악FM(30)	SO·위성(10)
87.5% 이상	30점	30점	10점
75% 이상 ~ 87.5% 미만	26.87점	27.5점	9점
62.5% 이상 ~ 75% 미만	23.75점	25점	8점
50% 이상 ~ 62.5% 미만	20.62점	22.5점	7점
37.5% 이상 ~ 50% 미만	17.5점	20점	6점
25% 이상 ~ 37.5% 미만	14.37점	17.5점	5점
12.5% 이상 ~ 25% 미만	11.25점	15점	4점
12.5% 미만	8.12점	12.5점	3점
0%	5점	10점	2점

자체심의 운영실적

1. 평가척도

평가항목	평가척도
자체심의 운영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심의기구의 전문성 및 실효성 있는 심의시스템 구축 여부 종합 평가 ·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 여부, 대본 심의 및 제작물 심의 비율, 심의시기,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여부, 월평균 1인당 심의 건수 등을 평가

2. 세부기준

평가척도	세부기준	배점				
		TV	R	SO· 위성	PP (보도)	PP (홈쇼핑)
		30점	50점	10점	50점	50점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 여부	-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시 만점 / 미설치 0점	6점	15점	2점	8점	12.5점
대본 심의 및 제작물 심의 비율	- 대본 심의 및 제작물 심의 비율 평가 (<표1> 참조)	6점	-	2점	8점	-
심의시기	- 미필 프로그램 건수를 포함한 심의시기에 따른 평가 (<표2> 참조)	6점	-	2점	8점	12.5점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여부	- 제작진 등의 심의 배제 만점 / 제작진 등의 심의 참여 0점	6점	15점	2점	8점	12.5점
월평균 1인당 심의 건수	- 월평균 1인당 심의건수에 따른 평가 (<표3> 참조)	6점	20점	2점	8점	12.5점
공정보도를 위한 자체 노력 여부	- 자체 노력 여부 평가 (<표4> 참조)	-	-	-	10점	-

〈표1〉 대본 심의 및 제작물 심의비율에 따른 배점표

제작물심의비율	80%이상-100%	60%이상-80%미만	40%이상-60%미만	20%이상-40%미만	0%-20%미만
TV	6점	4.5점	3점	1.5점	0점
SO·위성	2점	1.5점	1점	0.5점	0점
PP(보도)	8점	6점	4점	2점	0점

〈표2〉 미필 프로그램 건수를 포함한 심의시기에 따른 배점표

심의시기	당일심의비율 25%미만	당일심의비율 25%이상-50%미만	당일심의비율 50%이상	미필건수 1-5건	미필건수 6건 이상
TV	6점	4.5점	3점	1.5점	0점
SO·위성	2점	1.5점	1점	0.5점	0점
PP(보도)	8점	6점	4점	2점	0점
PP(홈쇼핑)	12.5점	9.375점	6.25점	3.125점	0점

〈표3〉 월평균 1인당 심의건수에 따른 배점표

월평균 1인당 심의건수	50건 미만	50건 이상 - 75건 미만	75건 이상 - 100건 미만	100건 이상 - 125건 미만	125건 이상
TV	6점	4.5점	3점	1.5점	0점
SO·위성	2점	1.5점	1점	0.5점	0점
PP(보도)	8점	6점	4점	2점	0점
PP(홈쇼핑)	12.5점	9.375점	6.25점	3.125점	0점

월평균 1인당 심의건수	150건 미만	150건 이상 - 200건 미만	200건 이상 - 250건 미만	250건 이상 - 300건 미만	300건 이상
R	20점	15점	10점	5점	0점

〈표4〉 공정보도를 위한 자체 노력 여부에 따른 배점표

공정보도를 위한 자체노력(10점)	공정보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여부 (4점)	제도적 장치의 운영결과(6점)			
		운영결과 上	운영결과 中	운영결과 下	운영결과 없음
PP(보도)	4점	6점	4점	2점	0점

시청자불만처리의 적절성

1. 평가척도

평가항목	평가척도
시청자불만처리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불만에 대한 처리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시청자불만처리 전담 부서 여부, 방송사에 접수된 시청자불만처리 절차 (불만접수와 처리 과정의 효율성) 등 평가

2. 세부기준

가. 기본원칙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불만처리의 적절성’ 및 ‘방송사업자의 시청자 불만처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불만처리의 적절성’은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재 조치한 사항, 행정지도 사항, 해당 방송사 유의 통보 사항, 해당 방송사의 조치 또는 개선이 필요하여 이첩 처리한 사항 중 미처리되거나 회신이 지연된 사항, 방송사 이첩 처리 완료 후 동일불만이 다시 제기된 사항의 충수를 기준으로 함.

(단,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불만사항 중 단순질의 및 시청자의 착오로 인한 불만과 처리 결과가 기각 및 각하, 사무처 답변처리 등인 경우는 단순 경미한 사안 또는 방송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방송사의 불만처리 효율성’ 평가는 전담부서 설치여부와 불만접수 및 처리과정의 효율성을 평가함.

나. 평가점수 배점기준

평가척도	세부기준	배점				
		TV	R	SO· 위성	PP (보도)	PP (홈쇼핑)
		30점	30점	50점	20점	50점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불만처리의 적절성 여부	-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불만처리의 적절성 (<표1> 참조)	15점	15점	25점	10점	20점
방송사의 시청자불만처리 전담부서 운영	- 전담부서 설치시 만점/ 미설치시 0점	3.75점	3.75점	6.25점	2.5점	5점
	- 야간 및 주말 민원접수 시스템 구축시 만점/ 미구축시 0점	3.75점	3.75점	6.25점	2.5점	5점
방송사에 접수된 시청자불만처리 절차의 효율성 정도	- 시청자불만처리율 (<표2> 참조)	3.75점	3.75점	6.25점	2.5점	5점
	- 시청자 피드백 시스템 구축시 만점/ 미구축시 0점	3.75점	3.75점	6.25점	2.5점	5점
소비자 보호원의 구제조치 사항 건수	- 소비자 보호원의 구제조치 사항 건수에 따른 평가 (<표3> 참조)	-	-	-	-	10점

<표1>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불만처리의 적절성' 매체별 평가기준과 점수산정 기준

매체별 평가항목	세부항목(감점기준)		
지상파방송(TV/ R) - 시청자불만처리의 적절성 (15점)	① 행정지도 : 1건당 2점 ② 유의통보 : 1건당 0.3점 ③ 미처리 : 1건당 1점 ④ 30일 초과 : 1건당 0.5점 ⑤ 동일불만제기 : 1건당 0.5점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 시청자불만처리의 적절성 (25점)	세부항목	종합유선	위성방송
	① 행정지도	1건당 2점	1건당 2점
	② 유의통보	1건당 0.5점	10건당 0.5점
	③ 미처리	1건당 3점	1건당 0.3점
	④ 30일 초과	1건당 2점	1건당 0.2점
⑤ 동일불만제기	1건당 2점	1건당 0.2점	
보도PP - 시청자불만처리의 적절성 (10점)	① 행정지도 : 1건당 2점 ② 유의통보 : 1건당 1점 ③ 미처리 : 1건당 2점 ④ 30일 초과 : 1건당 1점 ⑤ 동일불만제기 : 1건당 1점		
홈쇼핑PP - 소비자 및 시청자불만 처리의 적절성(20점)	① 행정지도 : 1건당 4점 ② 유의통보 : 1건당 2점 ③ 미처리 : 1건당 4점 ④ 30일 초과 : 1건당 2점 ⑤ 동일불만제기 : 1건당 2점		

<표2> 방송사에 접수된 시청자불만처리율에 따른 점수배점

효율성 평가	시청자불만처리율 90% 이상	시청자불만처리율 80% 이상 ~ 90% 미만	시청자불만처리율 80% 미만
TV/R	3.75점	2.5점	1.25점
SO·위성	6.25점	4점	2점
보도 PP	2.5점	1.5점	0.75점
홈쇼핑 PP	5점	3점	1.5점

<표3> 소비자보호원의 구제조치 사항 건수에 따른 점수배점

방송채널사용사업자(홈쇼핑분야)	
소비자보호원의 구제조치 사항 건수	점수
없음	10점
1건이상 3건이하	9점
4건이상 6건이하	8점
7건이상 9건이하	7점
10건이상 12건이하	6점
13건이상 15건이하	5점
16건이상 18건이하	4점
19건이상 21건이하	3점
22건이상 24건이하	2점
25건이상 27건이하	1점
28건이상	0점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1. 평가척도

평가항목	평가척도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종합 평가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내용 평가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 평가

2. 세부기준

가. 자체제작비율 50%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보도PP

평가척도	세부기준	배점				
		TV	R	SO· 위성	PP (보도)	PP (홈쇼핑)
		20점	-	-	40점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내용 평가	- 방송사업자가 시청자 단체 또는 외부 전문가 그룹에게 내용평가를 받는 시스템의 구축 여부 평가 (시스템 구축시 만점/미구축시 0점)	10점	-	-	20점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 평가	- 편성시간대에 따른 평가 (A급-만점, B급-5점/10점, C급-0점) (<표1> , <표2> 참조)	10점	-	-	20점	-

나. 자체제작비율 50% 미만인 지상파방송사업자

평가척도	세부기준	배점				
		TV	R	SO· 위성	PP (보도)	PP (홈쇼핑)
		20점	-	-	40점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내용 평가	- 방송사업자가 시청자 단체 또는 외부 전문가 그룹에게 내용평가를 받는 시스템의 구축 여부 평가 (시스템 구축시 만점/미구축시 0점)	5점	-	-	-	-
	- 자체제작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여부 평가 (편성시 만점/미편성시 0점)	5점	-	-	-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 평가	- 수중계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의 편성시간대에 따른 평가 (A급-만점, B급-2.5점, C급-0점) (<표1> 참조)	5점	-	-	-	-
	- 자체제작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의 편성시간대에 따른 평가 (A급-만점, B급-2.5점, C급-0점) (<표1> 참조)	5점	-	-	-	-

<표1>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에 따른 등급(지상파TV의 경우)

편성시간대	평일	토·일요일
24:00-09:00	C	C
09:00-17:00		B
17:00-18:00	B	A
18:00-19:00		
19:00-23:00	A	A
23:00-24:00	B	B

<표2>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에 따른 등급(보도PP의 경우)

편성시간대	주중 · 주말
02:00-04:00	C
04:00-12:00	B
12:00-14:00	C
14:00-18:00	A
18:00-20:00	B
20:00-22:00	C
22:00-02:00	A

시청자위원회

1. 평가척도

평가항목	평가척도
시청자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자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 구성의 적절성: 방송법령에 의한 추천단체의 추천 여부, 시청자위원 정족수 구성 여부 · 운영현황: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여부,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활용 여부, 매월 정기회의 개최 여부, 월간 운영실적 제출 및 보고시한 준수 여부

2. 세부기준

평가척도	세부기준	배점				
		TV	R	SO·위성	PP (보도)	PP (홈쇼핑)
		20점	-	-	40점	-
추천단체의 적절성	- 부적격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위원수에 따라 1점 감점처리	5점	-	-	10점	-
정족수 유지 여부	- 정족수에 미달하는 인원수에 따라 1점 감점 처리	2.5점	-	-	5점	-
회의록 공개여부	- 공개시 만점/ 비공개시 0점	5점	-	-	10점	-
시청자위원 제시 의견 활용 여부	- 시청자위원 제시 의견 활용 비율에 따른 평가 (<표1> 참조)	2.5점	-	-	5점	-
매월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매월 정기회의 개최시 만점 / 미개최시 0점	2.5점	-	-	5점	-
월간 운영실적 제출 및 보고시한 준수 여부	- 월간 운영실적 제출 및 보고시한 준수시 만점/ 위반시 0점	2.5점	-	-	5점	-

〈표1〉 “시청자위원 제시 의견 활용 여부”에 따른 배점표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활용 비율	80% 이상	80% 미만 60% 이상	60% 미만 40% 이상	40% 미만 20% 이상	20% 미만	없음
TV	2.5점	2점	1.5점	1점	0.5점	0점
PP(보도)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1. 평가척도

평가항목	평가척도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건당 주의 1점/ 경고 2점/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각 4점, 병과시 6점/ 시정명령 10점/ 과태료 12점/ 과징금 부과시 ①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 위반인 경우 : 20점 감점 ②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3호 위반인 경우 :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2. 세부기준

- 수중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척도 세부기준은 기준 감점 점수의 50% 감점.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1. 평가척도

평가항목	평가척도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 평가대상 : 자체편성비율 50% 이상인 종합편성 방송사업자 - 오락편성 비율 60% 미만을 만점으로 9등급 평가 · 60% 미만 : 60점, 60% 이상 ~ 61.5% 미만 : 52.5점, 61.5% 이상 ~ 63% 미만 : 45점, 63% 이상 ~ 64.5% 미만 : 37.5점, 64.5% 이상 ~ 66% 미만 : 30점, 66% 이상 ~ 67.5% 미만 : 22.5점, 67.5% 이상 ~ 69% 미만 : 15점, 69% 이상 ~ 70% 미만 : 7.5점, 70% 이상 : 0점

2. 세부기준

가. 주시청시간대 기준

- ‘주시청시간대’라 함은 방송법시행령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제3항에 의거, 평일은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함.

나. 프로그램 분류기준

- 오락프로그램은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 형식상 애니메이션, 드라마, 버라이어티쇼(토크쇼 포함), 음악쇼, 퀴즈/게임쇼, 영화, 코미디, 스포츠, 오락성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을 말한다.
- 보도프로그램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시사에 관한 속보 또는 해설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 형식상 뉴스와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말한다.
- 교양프로그램은 국민의 교양향상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어린이·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 형식상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토론, 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말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예외사항을 둔다.

- ① 자선 등 공익적 캠페인 전개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양정보 제공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버라이어티쇼(교양성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는 교양프로그램으로 분류한다.
 - 연예/연애/음식/패션/희귀성·진귀성 등을 주된 소재로 한 가십성 정보는 교양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식교양을 목적으로 하는 퀴즈쇼는 교양프로그램으로 분류한다.
- ③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편성평가 항목 중 '어린이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으로 인정한 프로그램에 한한다)은 형식과 관계없이 교양프로그램으로 분류한다.
- ④ 스포츠 관련 스트레이트 보도(순수 뉴스) 프로그램은 보도프로그램으로 분류한다.

※ 상기기준에 의거하되, 보도/교양/오락이 융합된 복합장르 프로그램은 KI 수용자평가지수 조사시 수용자 옴니버스 조사를 부가적으로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방송평가위원회에서 해당분야를 결정한다.

지역방송사 자체제작비율

1. 평가척도

평가항목	평가척도
지역방송사 자체제작비율	※ 평가대상 : KBS 지역총국, 지역 MBC, 지역민방(자체편성비율 50% 이상인 종합편성 방송사업자 제외) - KBS 지역총국 : 자체제작비율 10%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 지역 MBC : 자체제작비율 15%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 지역 민방 : 자체제작비율 20%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2. 세부기준

가. 지역방송사 자체제작물 산정 기준

- 지역방송사업자의 자체제작 프로그램은 해당 지역방송사(총국)가 자체기획, 제작, 편성하여 저작권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칭하나 지역방송사(총국)끼리의 공동제작 프로그램도 포함함.
- 자체제작 프로그램 산정시 포함되는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범위는 공동기획, 공동투자, 공동제작의 3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이를 충족시키는 공동제작 프로그램 편성시간량을 자체제작물 편성시간으로 산입함.
- 양질의 자체제작 프로그램 제작 장려를 위하여 전국에 방송된 지역자체제작물은 편성시간의 50%를 가산하여 100분의 150으로 인정함.
- 지역 자체제작물 편성시간으로 산정되는 지역 공동제작물의 경우도 전국에 방송되었을 때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함.
- 지역 KBS 총국의 경우 지역 MBC와 지역 민방과 동일한 자체제작물 산정기준을 적용하며, KBS-1TV만 포함하고 KBS-2TV는 제외함.

나. '지역방송사 자체제작비율' 평가척도 배점기준

1) KBS 지역총국의 배점 기준

- 자체제작비율 10%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 10% 이상 : 60점, 8.75% 이상 ~ 10% 미만 52.5점,
7.5% 이상 ~ 8.75% 미만 : 45점, 6.25% 이상 ~ 7.5% 미만 : 37.5점,
5% 이상 ~ 6.25% 미만 : 30점, 3.75% 이상 ~ 5% 미만 : 22.5점,
2.5% 이상 ~ 3.75% 미만 : 15점, 1.25% 이상 ~ 2.5% 미만 : 7.5점,
1.25% 미만 : 0점

2) 지역 MBC의 배점 기준

- 자체제작비율 15%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 15% 이상 : 60점, 13.12% 이상 ~ 15% 미만 52.5점,
11.25% 이상 ~ 13.12% 미만 : 45점, 9.37% 이상 ~ 11.25% 미만 : 37.5점,
7.5% 이상 ~ 9.37% 미만 : 30점, 5.62% 이상 ~ 7.5% 미만 : 22.5점,
3.75% 이상 ~ 5.62% 미만 : 15점, 1.87% 이상 ~ 3.75% 미만 : 7.5점,
1.87% 미만 : 0점

3) 지역 민방의 배점 기준

- 자체제작비율 20%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 20% 이상 : 60점, 17.5% 이상 ~ 20% 미만 52.5점,
15% 이상 ~ 17.5% 미만 : 45점, 12.5% 이상 ~ 15% 미만 : 37.5점,
10% 이상 ~ 12.5% 미만 : 30점, 7.5% 이상 ~ 10% 미만 : 22.5점,
5% 이상 ~ 7.5% 미만 : 15점, 2.5% 이상 ~ 5% 미만 : 7.5점,
2.5% 미만 : 0점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1. 평가척도

평가항목	평가척도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외주제작 프로그램 법정 편성비율 준수여부 -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프로그램 법정 편성비율 준수여부 - 주시청시간대 외주제작 프로그램 법정 편성비율 준수여부

2. 세부기준

가. 개념기준

- 외주제작 프로그램(방송법 제72조제1항)/ 특수관계자(방송법시행령 제3조제1항, 제2항) /주시청시간대(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3항) 등 세부척도에 포함된 개념 정의는 관련 방송 법령 기준에 따름.

나. 배점기준

- ‘전체 외주제작 프로그램 법정 편성비율 준수 여부’,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프로그램 법정 편성비율 준수 여부’, ‘주시청시간대 외주제작 프로그램 법정 편성비율 준수 여부’를 각각 대등한 척도로 간주하고, 동일하게 10점씩 배점하며, 관련 법정 비율 준수 시 만점, 위반 시 0점을 부여함.

다. 편성비율 산정 기준

- 세부척도별 편성비율 만점기준은 해당기간의 방송통신위원회 편성비율 고시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연도 중간에 편성비율 고시가 개정되어 만점 기준이 변경될 경우, 해당 기간별로 평가한 후 합산하여 연간 평균 점수를 산정함.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

1. 평가척도

평가항목	평가척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 대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법정 편성비율 준수여부
	전체방송시간 대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법정 신규 편성비율 준수여부

2. 세부기준

가. 개념기준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등 세부척도에 포함된 개념 정의는 관련 방송법령(방송법 제7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기준을 따름.

나. 배점기준

평가척도	세부기준	배점				
		TV(30점)	R	SO/위성	PP(보도)	PP(홈쇼핑)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법정 편성비율 준수 여부	-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고시 준수시 만점 / 위반시 0점	10점	-	-	-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법정 신규 편성비율 준수 여부	- 방송법시행령 및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고시 준수시 만점 / 위반시 0점	20점	-	-	-	-

다. 편성비율 산정 기준

- 세부척도별 편성비율 만점기준은 해당기간의 방송법규(방송법시행령 및 방송 프로그램 편성비율 고시)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연도 중간에 편성비율 고시가 개정되어 만점 기준이 변경될 경우, 편성비율 고시 적용 기간에 의거하여 평가함.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1. 평가척도

평가항목	평가척도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p>-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비율(30점) : 8%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 이상: 30점, 4.0% 미만~3.5% 이상: 26.25점, 3.5% 미만~3.0% 이상: 22.50점, 3.0% 미만~2.5% 이상: 18.75점, 2.5% 미만~2.0% 이상: 15.00점, 2.0% 미만~1.5% 이상: 11.25점, 1.5% 미만~1.0% 이상: 7.50점, 1.0% 미만~0.5% 이상: 3.75점, 0.5% 미만: 0점 <p>-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편성비율(30점) : 4%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 이상: 30점, 8.0% 미만~7.0% 이상: 26.25점, 7.0% 미만~6.0% 이상: 22.50점, 6.0% 미만~5.0% 이상: 18.75점, 5.0% 미만~4.0% 이상: 15.00점, 4.0% 미만~3.0% 이상: 11.25점, 3.0% 미만~2.0% 이상: 7.50점, 2.0% 미만~1.0% 이상: 3.75점, 1.0% 미만: 0점

2. 세부기준

- ‘어린이 프로그램’은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발달단계에 맞게 정규 또는 특집으로 제작되어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발달, 문화적 정체성 확립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함.
※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2조4항 : “어린이”라 함은 13세 미만의 자를 말함.
- 어린이 교육·정보제공 프로그램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정규 교과과정을 다루거나 그에 준하는 학습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작된 프로그램’ 과 ‘어린이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지식이나 상식, 시의적절하고 흥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 프로그램 장르 중 뉴스, 시사보도(매거진 등), 다큐멘터리(탐사/기행 등), 교육·문화예술, 퀴즈쇼를 포함한다.

○ 다만, 기타 장르에 속하는 프로그램(드라마, 애니메이션, 버라이어티쇼, 음악쇼, 영화, 코미디, 스포츠 등)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시만 어린이 교육·정보제공 프로그램으로 인정한다.

1. 취학전 아동 종합교육 프로그램(예시> TV유치원)

2. 동요/동화구연/웅변/춤 등 어린이 참여 경연대회 프로그램

3. 어린이 언어교육, 과학교육, 성교육, 인권교육 등 특정분야 교육 및 정보제공 목적이 명백한 프로그램.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편성

1. 평가척도

평가항목	평가척도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막방송 편성비율(24점) : 50%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 이상 : 24점, 45% 이상 ~ 50% 미만 : 21점, 40% 이상 ~ 45% 미만 : 18점, 35% 이상 ~ 40% 미만 : 15점, 30% 이상 ~ 35% 미만 : 12점, 25% 이상 ~ 30% 미만 : 9점, 20% 이상 ~ 25% 미만 : 6점, 15% 이상 ~ 20% 미만 : 3점, 15% 미만 : 0점 - 수화방송 편성비율(24점) : 5%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 이상 : 24점, 4.2% 이상 ~ 5% 미만 : 21점, 3.5% 이상 ~ 4.2% 미만 : 18점, 2.8% 이상 ~ 3.5% 미만 : 15점 2.1% 이상 ~ 2.8% 미만 : 12점, 1.4% 이상 ~ 2.1% 미만 : 9점, 0.7% 이상 ~ 1.4% 미만 : 6점, 0% 이상 ~ 0.7% 미만 : 3점, 0% : 0점 -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12점) : 5%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 이상 : 12점, 4.2% 이상 ~ 5% 미만 : 10.5점, 3.5% 이상 ~ 4.2% 미만 : 9점, 2.8% 이상 ~ 3.5% 미만 : 7.5점 2.1% 이상 ~ 2.8% 미만 : 6점, 1.4% 이상 ~ 2.1% 미만 : 4.5점, 0.7% 이상 ~ 1.4% 미만 : 3점, 0% 이상 ~ 0.7% 미만 : 1.5점, 0% : 0점

2. 세부기준

자막방송 프로그램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청각메시지를 전자코드 형태로 변환 전송하여, TV화면에 자막으로 나타나게 하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프로그램
수화방송 프로그램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화면 안에 또 하나의 분리된 화면(Picture in Picture)을 통해 프로그램의 청각메시지를 수화로 통역하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프로그램
화면해설방송 프로그램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프로그램 인물들의 행동, 의상, 몸짓 및 기타 장면의 상황변화 요소들을 음성으로 설명하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프로그램

직접제작·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1. 평가척도

평가항목	평가척도
직접제작·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채널이나 직접사용채널에 대한 직접제작 또는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실적을 평가(녹음·녹화 채널은 0점) - 지역채널의 액세스 프로그램 편성시간량 및 액세스 프로그램 활성화 노력 (※평가대상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2. 세부기준

가. 개념기준

- 1) 직접제작 프로그램 : 해당 방송사업자가 자체 기획, 제작, 편성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 2) 외주제작 프로그램 :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정의는 방송법 제72조제1항의 기준을 따름.
- 3) 액세스(시청자참여) 프로그램 : 방송제작을 업(業)으로 하지 않는 자연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직접 제작하여 방송된 프로그램

나. 배점기준

- '직접제작 또는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실적 평가'는 편성비율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배점하되, 직접사용채널이 2개 이상일 경우, 채널별 만점(15점)을 기준으로 편성비율에 따라 각각의 채널 점수를 구하고, 이를 합산하여 채널 수로 나눈 평균 점수로 산정함.

평가척도	세부기준	배점	
		SO(30점)	위성(30점)
직접제작 또는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실적 평가 (지역채널 또는 직접사용채널)	- 채널별 편성비율에 따른 5등급 평가 (<표> 참조) - 직접사용채널 운용시 채널별 평균치 사용	15점	직접사용채널편성 30점
지역채널의 액세스 프로그램 편성시간량 및 액세스 프로그램 활성화 노력	- 편성비율에 따른 5등급 평가 5%이상 편성시 10점, 3%이상 5%미만 편성시 7.5점, 1%이상 3%미만 편성시 5점, 1%미만 편성시 2.5점, 미편성시 0점	10점	해당사항 없음
	- 액세스 프로그램 활성화 노력 평가 우수 5점 보통 2.5점 미흡 0점	5점	

<표> 직접제작·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평가척도 배점기준

배점		편성비율
SO(15점)	위성(30점)	
15점	30점	90% 이상
11.25점	22.5점	80% 이상 ~ 90% 미만
7.5점	15점	70% 이상 ~ 80% 미만
3.75점	7.5점	60% 이상 ~ 70% 미만
0점	0점	60% 미만(녹음 및 녹화 채널)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직접제작·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시간량 산정시 본방(초방) 또는 순환방송에 관계없이 전체 방송시간을 인정함
- 기타 사항
 - 액세스 프로그램의 경우 SO간의 교환프로그램을 100% 인정함 (비록 교환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프로그램 편성을 배제하고 시간을 할애한 점을 고려한 것임.)
 - 시청자, 비영리법인이 제작하지 않은 시정뉴스나 선관위 제작 프로그램, 관내소식 등은 인정하지 않음.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1. 평가척도

평가항목	평가척도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 평가대상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현황 평가

2. 세부기준

가. 개념기준

- 방송법시행령 제5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의거,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의 범위를 2, 3, 5호의 기준에 한정함.
- 방송법시행령 제55조제3항의 1호에 해당하는 시청자가 자체 제작하여 방송을 요청하는 프로그램의 경우는 액세스 프로그램과 중복되어 제외하며, 4호의 방송프로그램 안내는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평가항목의 취지에서 벗어나므로 제외함.
- 단, 방송법시행령 제55조제3항의 5호에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평가항목의 본래 취지를 살려 SO 지역채널의 프로그램 형식에 관계없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역 사회 또는 문화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당해 방송구역이 속한 지역보도 프로그램, 주민생활정보프로그램, 각종 지역행사의 중계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한 오락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기준을 마련함.

※ 방송법 시행령 제55조(지역채널의 운용)

- ③ 지역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하여 방송을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
 2.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구역안의 지역생활정보 방송프로그램
 3. 지방자치단체의 시책홍보를 위한 방송프로그램
 4. 방송프로그램 안내
 5. 기타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주민 편의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송프로그램

나. 배점기준

<표1>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평가척도 배점 기준

배점	편성비율
SO(40점)	
40점	80% 이상
35점	70% 이상 ~ 80% 미만
30점	60% 이상 ~ 70% 미만
25점	50% 이상 ~ 60% 미만
20점	40% 이상 ~ 50% 미만
15점	30% 이상 ~ 40% 미만
10점	20% 이상 ~ 30% 미만
5점	10% 이상 ~ 20% 미만
0점	10% 미만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시간량 산정시 본방(초방) 또는 순환방송에 관계없이 전체 방송시간을 인정함.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1. 평가척도

평가항목	평가척도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여부 및 편성 현황 -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현황

2. 세부기준

가. 개념기준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은 방송법 제89조에 의거, 방송사업자가 당해 방송사업의 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 의견을 수렴한 프로그램으로 정의함.
 - 홈쇼핑 채널의 경우 방송법에서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방송 평가에서는 자율적인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을 평가척도에 포함시키고 있음.
- ‘공익적 프로그램’이라 함은 수익의 공익적 환원을 목적으로, 방송시간 자체를 기부하는 프로그램 행태로 정의할 수 있음.
 - 홈쇼핑PP에서 공익적 프로그램의 유형은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을 제외한 비수익적 프로그램으로 ‘사회공헌 프로그램’, ‘건강정보 프로그램’, ‘생활정보 프로그램’ 등 공익적 내용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음.

나. 배점기준

평가 척도	세부기준	배점				
		TV	R	SO-위성	PP(보도)	PP(홈쇼핑)
		-	-	-	-	20점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편성시간량에 따른 5등급 평가 - 월간 단위로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을 60분이상 편성시 10점, 40분이상 60분미만 편성시 7.5점, 20분이상 40분미만 편성시 5점, 20분미만 편성시 2.5점, 미편성시 0점	-	-	-	-	10점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편성시간량에 따른 5등급 평가 - 월간 단위로 공익적 프로그램을 90분이상 편성시 10점, 60분이상 90분미만 편성시 7.5점, 30분 이상 60분미만 편성시 5점, 30분미만 편성시 2.5점, 미편성시 0점	-	-	-	-	10점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과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모두 편성 시간량 산정시 본방(초방) 또는 순환방송에 관계없이 전체 방송시간을 인정함

재난방송 편성 및 실시

1. 평가척도

평가항목	평가척도
재난방송 편성 및 실시	- 재난방송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

2. 세부기준

가. 개념기준

- 방송법 제75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6호 『재난방송실시에관한기준』 제2조에 의거함.

나. 기본원칙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3조제3항, 「방송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사업자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 집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
-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에 의거,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의 경우 종합편성 사업자에 한함.
- 재난방송의 편성실적이라 함은 재난발생시 혹은 재난발생 전후 편성한 속보/특보 등의 특집프로그램의 총 편성시간량을 의미함(수중계 프로그램의 편성량과 자막방송 건수도 편성실적으로 인정함).
- 재난피해의 사전 예방 등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실적(홈쇼핑PP 제외)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해 제작/방영된 캠페인 등을 의미함.
- 재난방송 관련 인력 운영여부는 전임 또는 겸임(재난방송 업무와 타업무를 병행하는 인력)으로 재난방송 업무 담당자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임.

- 재난방송 대응시스템 구축여부는 기상청이나 소방방재청,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재난방송요청정보를 자동적으로 통보 받을 수 있는 재난방송 온라인시스템 구축 및 운영여부에 대한 평가임.
- 재난방송 관련 교육 실적은 재난방송 매뉴얼 교육 및 재난 예방과 대응 요령 등에 대한 직원교육 실적을 교육 시간량에 의거하여 평가함.
 -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보도국이나 관련 부서 등 일부가 참가한 교육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함.
 - 외부기관이 지정한 교육 프로그램에 직원을 참여시키거나 전문강사의 초청강연 및 세미나 등을 실시할 경우도 교육실적으로 인정함.

다. 평가 점수 배점기준

평가척도	세부기준	배점				
		TV	R	SO· 위성	PP (보도)	PP (홈쇼핑)
		60점	50점	-	40점	10점
재난방송 편성의 적절성	- 재난방송의 편성실적에 대한 5등급 평가	20점	20점	-	10점	5점
	- 재난피해의 사전 예방 등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실적에 대한 5등급 평가	20점	10점	-	10점	-
재난방송 매뉴얼의 적정성	- 자체제작된 재난방송 매뉴얼 마련 여부 (매뉴얼 마련시 만점 / 없는 경우 0점)	5점	5점	-	5점	5점
재난방송 관련 인력 운영 및 대응시스템 구축	- 재난방송 관련 인력 운영여부 (관련 인력 운영시 만점 / 미운영시 0점)	5점	5점	-	5점	-
	- 재난방송 대응시스템 구축여부 (시스템 구축시 만점 / 미구축시 0점)	5점	5점	-	5점	-
재난방송 관련 교육 실적	- 재난방송 관련 교육실적에 대한 5등급 평가	5점	5점	-	5점	-

라. 배점방식

- 매체별(지상파TV, 보도PP / 지상파 R / 홈쇼핑PP) 최고점을 기준으로 5등급으로 나누어 배점함. 다만, 사업실적이 전무한 경우는 0점 처리함.

경영의 적정성

1. 평가척도

평가항목	평가척도
경영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편성지침과 편성절차의 합리성 및 준수여부 - 예산과 실적 차이분석과 적시에 피드백하는지 여부 - 예산과 중장기 경영 계획과의 연계성

2. 세부기준

※ 평가대상 사업자 및 배점 : 지상파TV, R, 보도PP(총40점)

가. 평가 점수 배점기준

평가척도	세부기준	배점
		TV/R/보도PP
		40점
예산편성지침과 편성절차의 합리성 및 준수여부	예산편성지침 여부 - 손익예산, 자본예산, 투자예산	4
	예산 편성 절차 - 규정 존재 여부, 부서간 조정 절차	3
	예산 변경 절차 - 규정 존재 여부, 부서간 조정 절차	3
	주요 항목의 예산 편성 내용 - 매출액, 매출원가 및 판관비, 자본예산, 투자예산	10
예산과 실적 차이분석과 적시에 피드백하는지 여부	예산과 실적 차이분석 담당부서 유무 부서 구성원 중 전문가 포함 여부, 외부 전문가 자문 여부	3
	당해 연도 예산의 수시 조정/변경 내역	3
	차이분석에 관한 내부 규정의 유무	2
	지난 연도 차이분석 결과의 반영 내용 - 당해 연도 예산 편성 전 예비차이분석 실시 여부, 지난 연도 결산 확정 후 당해 연도 예산에 피드백 여부, 차이분석 결과표에 의한 평가	7
예산과 중장기 경영 계획과의 연계성	중장기 경영계획 유무	3
	중장기 경영계획의 실행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예산내역 유무	2

재무의 건전성

1. 평가척도

평가항목	평가척도
재무의 건전성	-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영업이익율, 총자산순이익율, 매출액 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등을 평가

2. 세부기준

※ 평가대상 사업자 및 배점 : 지상파TV, R, 보도PP(총40점), SO, 위성(총30점)

가. 평가 점수 배점 기준

평가척도	세부기준	배점			
		TV	R	SO·위성	보도PP
		40점	40점	30점	40점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영업이익율, 총자산순이익율, 매출액 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등을 평가	총자산순이익율, 매출액영업이익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총자산회전율,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증가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등 8개 재무비율에 대해 5등급 평가	40	40	30	40

나. 배점방식

- 유동비율, 부채비율, 매출액영업이익율, 총자산순이익율,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증가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총자산회전율 등 8개 재무비율에 대해 각 5점씩 배점하여 총 40점 배점함.(SO/위성의 경우 8개 재무비율에 대해 각 3.75점씩 배점하여 총 30점 배점함.)

- 2005, 2006, 2007년 3개년의 재무비율에 대해 1, 2 및 3의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가중평균비율을 산출함. 가중평균에 대한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구하여, <평균 \pm 0.5, 1 표준편차 분석>을 실시하여 점수배점 구간을 5개 구간(5점, 4점, 3점, 2점, 1점)으로 나누어 배점함.(SO, 위성의 경우 3.75점, 3점, 2.25점, 1.5점, 0.75점으로 나누어 평가함)

자회사(계열사) 평가결과 활용의 적정성

1. 평가척도

평가항목	평가척도
자회사(계열사) 평가결과 활용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회사 평가지표의 합리성 - 자회사 평가방법의 적정성 - 자회사 평가결과 활용의 적정성

2. 세부기준

※ 평가대상 사업자 및 배점 : 지상파TV(총30점)

가. 평가 점수 배점기준

평가척도	세부기준	배점
		지상파TV
		30점
자회사 평가지표의 합리성	- 경영의 효율성 측정 지표를 충분히 사용하는지 여부	4
	- 재무구조의 건전성 측정 지표를 충분히 사용하는지 여부	3
	- 조직운영의 적정성 측정 지표를 충분히 사용하는지 여부	3
자회사 평가방법의 적정성	- 자회사 평가 실시 주기	2
	- 자회사 평가 지표를 사전에 자회사에 공개하는지 여부	2
	- 자회사가 제출한 문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유무	2
	- 자회사 평가를 담당하는 상근 인력 유무	2
	- 감사가 자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도 수행하는지 여부	1
	- 현행 자회사 평가지표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지 여부	1
자회사 평가결과 활용의 적정성	- 자회사 평가결과의 활용 지침에 대한 명문화 여부	4
	- 자회사 경영상태에 문제가 있을 경우 조치에 대한 지침 구비 여부	3
	- 자회사 평가결과와 그에 따른 경영 권고안을 자회사 경영진에 제공하는지 여부	3

인적자원 개발 투자

1. 평가척도

평가항목	평가척도
인적자원 개발 투자	- 직무와 연관있는 정규 교육, 직무 향상 신기술 교육, 방송교육,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2. 세부기준

※ 평가대상 사업자 및 배점 : 지상파TV/R, SO, 위성, 보도PP(총30점), 홈쇼핑PP(총40점)

가. 평가 점수 배점기준

평가척도	세부기준	배점	
		지상파TV/R, SO, 위성, 보도PP	홈쇼핑PP
		30점	40점*
매출액 대비 교육비 비율	- 매출액 대비 교육비 비율에 대한 5구간 평가	10	10
1인당 교육비	- 전체 교육비 대비 인원수를 나눠 1인당 교육비를 산출하여 5구간 평가	10	10
직무와 연관있는 교육에 대한 평가	- 직무능력 향상 교육의 실시 여부 - 직무능력 향상 교육 내용 및 시간에 대한 5구간 평가	5	5
	- 교육참여도, 성취도에 대한 평가와 보상 여부에 대한 평가	5	5

* 홈쇼핑PP 점수 산정 방식

: 3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그 점수에 4/3를 곱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함.

나. 배점 방식

○ 매출액 대비 교육비 비율(10점)

- 각 사업자의 매출액 대비 교육비 비율을 산출하여 전체 사업자(지상파 그룹과 SO/위성/보도 및 홈쇼핑PP 그룹)에 대하여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구하여, 평균 \pm 0.5, 1 표준편차 분석을 실시함. 이후 점수배점 구간을 5개 구간(10점, 8점, 6점, 4점, 2점)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함.

○ 1인당 교육비(10점)

- 전체 교육비 대비 인원수를 나눠 1인당 교육비를 산출하여 전체 사업자(지상파 그룹과 SO/위성/보도 및 홈쇼핑PP 그룹)에 대하여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구하여, 평균 \pm 0.5, 1 표준편차 분석을 실시함. 이후 점수배점 구간을 5개 구간(10점, 8점, 6점, 4점, 2점)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함.

○ 직무능력 향상 교육시간(5점)

- 직무능력 향상 교육의 실시 여부 : 총 1점(실시 1점, 미실시 0점)
- 직무능력 향상 교육 시간(연 평균) : 총 4점
: 각 사업자의 직무능력 향상 관련 교육 시간을 파악하여 교육시간이 높은 순으로 상위, 중상, 보통, 중하, 하위 5구간으로 구분하여 각각 4점, 3점, 2점, 1점, 0점으로 평가함.

○ 교육참여도, 성취도에 대한 평가와 보상 여부(5점)

- 평가와 보상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5점, 둘 중 하나만 이루어지면 3점, 둘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1점

방송기술 투자

1. 평가척도

평가항목	평가척도
방송기술 투자	-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

2. 세부기준

※ 평가대상 사업자 및 배점 : 지상파TV, R, SO, 위성, 보도PP(총30점), 홈쇼핑PP(총40점)

가. 평가 점수 배점기준

평가척도	세부기준	배점	
		지상파TV/R, SO, 위성, 보도PP	홈쇼핑PP
		30점	40점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	- 매출액 대비 방송기술관련 투자액 비율(우수도 비율)에 대한 6등급 평가	20	25
	- '해당연도의 매출액 대비 방송기술관련 투자액' 비율을 '이전연도의 매출액 대비 방송기술관련 투자액 비율'로 나눈 값(향상도 비율)에 대한 8등급 평가	10	15

나. 배점 방식

- 방송기술 투자 항목은 우수도(해당 연도 (t)의 매출액 대비 방송기술관련 투자액 비율)와 향상도 (해당 연도 (t)의 “매출액 대비 방송기술관련 투자액 비율”을 이전 연도 (t-1)의 “매출액 대비 방송기술관련 투자액 비율”로 나눈 값)로 평가하며 각 20점, 10점으로 배점함.(홈쇼핑PP의 경우 각 25점, 15점으로 배점함)

- 우수도는 매출액 대비 방송기술관련 투자액 비율을 구한 후 전체 사업자(지상파 그룹과 SO/위성/보도 및 홈쇼핑PP 그룹)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편차 \times 0.5)의 구간을 총 6개로 배열하여 평가함.

- 향상도는 해당 연도 (t)의 “매출액 대비 방송기술관련 투자액 비율”을 이전 연도 (t-1)의 “매출액 대비 방송기술관련 투자액 비율”로 나눈 값을 구한 후 전체 사업자(지상파 그룹과 SO/위성/보도 및 홈쇼핑PP 그룹)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편차 \times 0.5)의 구간을 총 8개로 배열하여 평가함.

공정거래 준수

1. 평가척도

평가항목	평가척도
공정거래 준수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거래 관련 조치사항 또는 조치사항 이행여부 평가

2. 세부기준

※ 평가대상 사업자 및 배점 : 전사업자

가. 평가 점수 배점기준(감점방식의 평가)

○ 감점내역

사업자별 배점	경고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행정지도
TV(30점)	3점	6점	9점	12점	3점
R(10점)	1점	2점	3점	4점	1점
SO, 위성(40점)	4점	8점	12점	16점	4점
보도PP(10점)	1점	2점	3점	4점	1점
홈쇼핑PP(30점)	3점	6점	9점	12점	3점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경고' 이상)와 관련한 감점내역은 위의 표와 같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는 행정지도에 국한되므로 위의 표의 행정지도 감점내역에 따름.

- 공정거래 관련 자율준수프로그램 또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 자율준수프로그램 또는 가이드라인을 제출하지 못하면 지상파TV, R, 보도PP의 경우 1점 감점, SO/위성의 경우 2점 감점, 홈쇼핑PP의 경우 4점 감점

방송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1. 평가척도

평가항목	평가척도
방송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 위반 건수에 따른 평가

2. 세부기준

※ 평가대상 사업자 및 배점 : 전사업자(총30점)

가. 평가 점수 배점기준(감점방식의 평가)

○ 감점내역

사업자별 배점	형벌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TV(30점)	15점	15점	10점	5점
R, SO, 위성, 보도 및 홈쇼핑PP(30점)	10점	10점	5점	3점

장애인 고용

1. 평가척도

평가항목	평가척도
장애인 고용	- 장애인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 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시 만점 부여

2. 세부기준

※ 평가대상 사업자 및 배점 : 지상파TV, R, 보도 및 홈쇼핑PP(총 20점), SO, 위성 (총15점)

가. 평가 점수 배점기준

평가척도	세부기준	배점	
		지상파TV/R, 보도및 홈쇼핑PP	SO, 위성
		20점	15점
장애인 종업원수 /평균 종업원수	- 장애인고용비율(장애인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을 산출하여 10구간으로 배점구간을 나누어 평가	20	15

나. 배점 방식

○ 장애인고용비율의 산정

- 장애인고용비율 : 장애인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상시근로자수)
- 최근 3개년도의 장애인고용비율을 가중평균하며, 2007년, 2006년, 2005년의 연도별 가중치는 각각 3, 2, 1로 함

$$\text{가중평균 장애인고용비율} = \frac{2007\text{년 장애인고용비율} \times 3 + 2006\text{년 장애인고용비율} \times 2 + 2005\text{년 장애인고용비율} \times 1}{6}$$

- 지상파TV, R, 보도 및 홈쇼핑PP의 경우 2.5% 이상 장애인 고용시 20점 만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하며, 0.25% 간격으로 10구간으로 배점구간을 나누어 평가함.
- SO, 위성의 경우 2.5% 이상 장애인 고용시 15점 만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하며, 0.25% 간격으로 10구간으로 배점구간을 나누어 평가함.
- '상시근로자수' 기준은 방송사업자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제출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서상의 월평균 상시 근무자수를 기준으로 함.
- 2007년도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장애인고용비율 항목 평가를 제외함.

여성 고용

1. 평가척도

평가항목	평가척도
여성 고용	- 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 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치 부여

2. 세부기준

※ 평가대상 사업자 및 배점 : 지상파TV/R, 보도 및 홈쇼핑PP(총20점), SO, 위성
(총15점)

가. 평가 점수 배점기준

평가척도	세부기준	배점	
		지상파TV/R, 보도 및 홈쇼핑PP	SO, 위성
		20점	15점
여성 종업원수/ 평균 종업원수	- 여성고용비율(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을 산출하여 10구간으로 배점구간을 나누어 평가	20	15

나. 배점 방식

○ 여성고용비율의 산정

- 여성 종업원수를 평균 종업원수로 나누어서 구함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가중치는 80%:20%로 함

$$\text{여성고용비율} = \frac{\text{연도별 여성 정규직 종업원수} \times 80\% + \text{여성 비정규직 종업원수} \times 20\%}{\text{정규직 종업원수} \times 80\% + \text{비정규직 종업원수} \times 20\%}$$

- 최근 3개년도의 여성고용비율을 가중평균하여 가중평균 여성고용비율을 산출

하며, 2007년, 2006년, 2005년의 연도별 가중치는 각각 3, 2, 1로 함

$$\text{가중평균 여성고용비율} = \frac{2007\text{년 여성고용비율} \times 3 + 2006\text{년 여성고용비율} \times 2 + 2005\text{년 여성고용비율} \times 1}{6}$$

- 지상파 및 PP(보도 및 홈쇼핑분야) 평가의 경우 전체 방송사업자(지상파 그룹, SO/위성/보도 및 홈쇼핑PP 그룹)에 대해 각각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뒤, 평균 ± 0.3, 0.6, 0.9, 1.2 값을 구해 총 10개 배점구간을 산출하여 20점에서 2점까지 구분하여 평가함.

- SO, 위성방송사업자 평가의 경우 SO/위성/보도 및 홈쇼핑PP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뒤, 평균 ± 0.3, 0.6, 0.9, 1.2 값을 구해 총 10개 배점구간을 산출하여 15점에서 1.5점까지 구분하여 평가함.

- 정규직의 요건
 - (1) 인사규정에 의하여 채용되었을 것
 - (2)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을 것
 - (3) 전일제 근로조건(주당 36시간 이상 근무)일 것
 - (4) 계속근무가능자일 것

(*) 계속근무가능자 : 계속근무불가능자가 아닌 자
계속근무불가능자 :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았으며, 특별한 사유(본인의 중대한 과실, 폐업 등으로 사업체 자체의 소멸 또는 고용조정, 천재지변 등) 없이도 계속근무가 불가능한 자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운영 여부

1. 평가척도

평가항목	평가척도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운영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적정성 - 내부 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 - 주요 경영사항 공시의 적시성과 충분성 - 사외이사 운영현황 - 소액주주 보호장치 - 세무조사에 의한 조치 결과

2. 세부기준

※ 평가 대상 사업자 및 배점 : 전사업자

가. 평가 점수 배점기준

○ 사업자별 배점기준

평가척도	TV	독립 라디오 사업자	SO, 위성	홈쇼핑PP	보도PP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적정성	20점	16점	15	15	16
내부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	5점	7점	5	5	7
주요 경영사항 공시의 적시성과 충분성	5점	7점	5	5	7
사외이사 운영 현황	-	-	5	5	-
소액주주 보호장치	-	-	5	5	-
세무조사에 의한 조치 결과	-	-	5	5	-
배점 합계	30점	30점	40점	40점	30점

나. 사업자별 세부기준

■ 지상파방송사업자

①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적정성(TV : 20점, 독립 라디오 사업자 16점)

평가항목		배점	
1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감점 (적정의견외의 의견종류에 따라 감점)	
2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	감점 (적정의견외의 의견종류에 따라 감점)	
3	내부회계 관리규정 마련 여부	TV	2
		라디오	2
		재단법인	2
4	내부회계 관리자	TV	2
		라디오	2
		재단법인	2
5	내부회계관리자가 이사회 및 감사에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한 횟수 ※ 외감법에 의한 보고의무가 있는 사업자만 대상으로 함	TV	2
		라디오	1
		재단법인	-
6	감사가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횟수※ 외감법에 의한 보고의무가 있는 사업자만 대상으로 함	TV	2
		라디오	1
		재단법인	-
7	내부회계 관리제도 관련 윤리강령(정책) 확립 및 윤리강령이 임직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 내부회계 관리제도 윤리강령 위반시 조치내용	TV	3
		라디오	2
		재단법인	3
8	업무분장 관련 세부사항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담당자, 정의, 승인권한, 업무절차 등)	TV	2
		라디오	1.5
		재단법인	2
9	회계정보 생성 정보시스템 구축내역	TV	1.5
		라디오	1.5
		재단법인	2
10	재무보고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백업하는 절차	TV	1.5
		라디오	1
		재단법인	2
11	내부회계 관리제도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TV	2
		라디오	2
		재단법인	-
12	감사에 의한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 방법	TV	2
		라디오	2
		재단법인	3

② 내부 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TV : 5점, 독립 라디오 사업자 7점)

평가항목		배점	
1	감사(감사위원회) 선임시 의결권 제한 지분율 ※감사(감사위원회) 선임시 의결권 제한 지분율을 정관에서 3% 미만으로 낮추고 있는 경우	(가점 항목)	
2	감사의 수/상근감사의 비율	TV	1
		라디오	1.5
		재단법인	2
3	감사가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이사 또는 사용인의 직무와 겸직 여부	TV	1
		라디오	1
		재단법인	-
4	감사가 보유한 주식수와 지분율(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경우)	(감점항목)	
5	내부감사실 운영 여부 및 내부감사실의 조직구성	TV	1
		라디오	1.5
		재단법인	2
6	감사의 주요 업무경력	TV	1
		라디오	1.5
		재단법인	1
7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중 부적격자 여부	TV	1
		라디오	1.5
		재단법인	2

③ 주요 경영사항 공시의 적시성과 충분성(TV : 총 5점, 독립 라디오 사업자 7점)

평가항목		배점	
1	공시항목점검표 구비	TV	0.5
		라디오	0.5
		재단법인	0.8
2	공시항목점검표 관리담당자와 승인권자	TV	1
		라디오	1
		재단법인	0.8
3	공시항목점검표 주기적 점검, 보완	TV	0.5
		라디오	0.5
		재단법인	0.8
4	지난 1년간 공시한 사항	TV	3
		라디오	5
		재단법인	4.6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①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적정성(SO/위성 15점)

	평가항목	배점	
1	외부감사인인 감사의견	감점	
2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인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	감점	
3	내부회계 관리규정 마련 여부	SO,위성	2
4	내부회계 관리자	SO,위성	2
5	내부회계관리자가 이사회 및 감사에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한 횟수 ※ 외감법에 의한 보고의무가 있는 사업자만 대상으로 함	SO,위성	1
6	감사가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횟수※ 외감법에 의한 보고의무가 있는 사업자만 대상으로 함	SO,위성	1
7	내부회계 관리제도 관련 윤리강령(정책) 확립 및 윤리강령이 임직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 내부회계 관리제도 윤리강령 위반시 조치내용	SO,위성	2
8	업무분장 관련 세부사항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담당자, 정의, 승인권한, 업무절차 등)	SO,위성	1.5
9	회계정보 생성 정보시스템 구축내역	SO,위성	
10	재무보고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백업하는 절차	SO,위성	1
11	내부회계 관리제도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SO,위성	2
12	감사에 의한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 방법	SO,위성	1.5

② 내부 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SO/위성 5점)

	평가항목	배점	
1	감사(감사위원회) 선임시 의결권 제한 지분율 ※감사(감사위원회) 선임시 의결권 제한 지분율을 정관에서 3% 미만으로 낮추고 있는 경우	- (가점 항목)	
2	감사의 수/상근감사의 비율	SO,위성	1
3	감사가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이사 또는 사용인의 직무와 겸직여부	SO,위성	1
4	감사가 보유한 주식수와 지분율(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경우)	SO,위성	(감점항목)
5	내부감사실 운영 여부 및 내부감사실의 조직구성	SO,위성	1
6	감사의 주요 업무경력	SO,위성	1
7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중 부적격자 여부	SO,위성	1

③ 주요 경영사항 공시의 적시성과 충분성(SO/위성 5점)

1	평가항목	배점	
		SO,위성	
1	공시항목점검표 구비	SO,위성	0.5
2	공시항목점검표 관리담당자와 승인권자	SO,위성	1
3	공시항목점검표 주기적 점검, 보완	SO,위성	0.5
4	지난 1년간 공시한 사항	SO,위성	3

④ 사외이사 운영 현황(SO/위성 5점)

1	평가항목	배점	
		SO,위성	
1	사외이사의 존재 여부	SO,위성	1
2	사외이사의 이사회 구성 비율	SO,위성	1.25
3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 비율	SO,위성	1.25
4	사외이사 중 부적격자 부	SO,위성	1.5

⑤ 소액주주 보호장치(SO/위성 5점)

1	평가항목	배점	
		SO,위성	
1	정관에서 집중투표청구권 배제하고 있는지 여부	SO,위성	1.5
2	정관에 보장된 소액주주 보호내용	SO,위성	2.5
3	이사의 자기거래 및 최대주주와 회사와의 거래를 통제하기 위한 내부규정 마련 여부	SO,위성	1

⑥ 세무조사에 의한 조치 결과(SO/위성 5점)

1	평가항목	배점	
		SO,위성	
1	세무조사 적출사항	SO,위성	2.5
2	세무조사 적출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내용	SO,위성	2.5

※ 최근 5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사업자에 한하여 평가함.

■ 보도PP

①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적정성(보도PP 16점)

	평가항목	배점	
1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감점	
2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	감점	
3	내부회계 관리규정 마련 여부	PP(보도)	2
4	내부회계 관리자	PP(보도)	2
5	내부회계관리자가 이사회 및 감사에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한 횟수 ※ 외감법에 의한 보고의무가 있는 사업자만 대상으로 함	PP(보도)	1
6	감사가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횟수 ※ 외감법에 의한 보고의무가 있는 사업자만 대상으로 함	PP(보도)	1
7	내부회계 관리제도 관련 윤리강령(정책) 확립 및 윤리강령이 임직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 내부회계 관리제도 윤리강령 위반시 조치내용	PP(보도)	2
8	업무분장 관련 세부사항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담당자, 정의, 승인권한, 업무절차 등)	PP(보도)	1.5
9	회계정보 생성 정보시스템 구축내역	PP(보도)	1.5
10	재무보고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백업하는 절차	PP(보도)	1
11	내부회계 관리제도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PP(보도)	2
12	감사에 의한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 방법	PP(보도)	2

② 내부 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보도PP 7점)

	평가항목	배점	
1	감사(감사위원회) 선임시 의결권 제한 지분율 ※감사(감사위원회) 선임시 의결권 제한 지분율을 정관에서 3% 미만으로 낮추고 있는 경우	- (가점 항목)	
2	감사의 수/상근감사의 비율	PP(보도)	1.5
3	감사가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이사 또는 사용인의 직무와 겸직여부	PP(보도)	1
5	감사가 보유한 주식수와 지분율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경우)	PP(보도)	(감점항목)
6	내부감사실 운영 여부 및 내부감사실의 조직구성	PP(보도)	1.5
7	감사의 주요 업무경력	PP(보도)	1.5
8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중 부적격자 여부	PP(보도)	1.5

③ 주요 경영사항 공시의 적시성과 충분성(보도PP 7점)

평가항목		배점	
1	공시항목점검표 구비	PP(보도)	0.5
2	공시항목점검표 관리담당자와 승인권자	PP(보도)	1
3	공시항목점검표 주기적 점검, 보완	PP(보도)	0.5
4	지난 1년간 공시한 사항	PP(보도)	5

■ **흡소핑PP**

①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적정성(흡소핑PP 15점)

평가항목		배점	
1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감점	
2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	감점	
3	내부회계 관리규정 마련 여부	PP(흡소핑)	2
4	내부회계 관리자	PP(흡소핑)	2
5	내부회계관리자가 이사회 및 감사에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한 횟수 ※ 외감법에 의한 보고의무가 있는 사업자만 대상으로 함	PP(흡소핑)	1
6	감사가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횟수 ※ 외감법에 의한 보고의무가 있는 사업자만 대상으로 함	PP(흡소핑)	1
7	내부회계 관리제도 관련 윤리강령(정책) 확립 및 윤리강령이 임직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 내부회계 관리제도 윤리강령 위반시 조치내용	PP(흡소핑)	2
8	업무분장 관련 세부사항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담당자, 정의, 승인권한, 업무절차 등)	PP(흡소핑)	1.5
9	회계정보 생성 정보시스템 구축내역	PP(흡소핑)	1
10	재무보고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백업하는 절차	PP(흡소핑)	1
11	내부회계 관리제도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PP(흡소핑)	2
12	감사에 의한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 방법	PP(흡소핑)	1.5

② 내부 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흡쇼핑PP 5점)

	평가항목	배점	
1	감사(감사위원회) 선임시 의결권 제한 지분율 ※감사(감사위원회) 선임시 의결권 제한 지분율을 정관에서 3% 미만으로 낮추고 있는 경우	- (가점 항목)	
2	감사의 수/상근감사의 비율	PP(흡쇼핑)	1
3	감사가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이사 또는 사용인의 직무와 겸직여부	PP(흡쇼핑)	1
4	감사가 보유한 주식수와 지분율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경우)	PP(흡쇼핑)	(감점항목)
5	내부감사실 운영 여부 및 내부감사실의 조직구성	PP(흡쇼핑)	1
6	감사의 주요 업무경력	PP(흡쇼핑)	1
7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중 부적격자 여부	PP(흡쇼핑)	1

③ 주요 경영사항 공시의 적시성과 충분성(흡쇼핑PP 5점)

	평가항목	배점	
1	공시항목점검표 구비	PP(흡쇼핑)	0.5
2	공시항목점검표 관리담당자와 승인권자	PP(흡쇼핑)	1
3	공시항목점검표 주기적 점검, 보완	PP(흡쇼핑)	0.5
4	지난 1년간 공시한 사항	PP(흡쇼핑)	3

④ 사외이사 운영 현황(흡쇼핑PP 5점)

	평가항목	배점	
1	사외이사의 존재 여부	PP(흡쇼핑)	1
2	사외이사의 이사회 구성 비율	PP(흡쇼핑)	1.25
3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 비율	PP(흡쇼핑)	1.25
4	사외이사 중 부적격자 여부	PP(흡쇼핑)	1.5

⑤ 소액주주 보호장치(흡쇼핑PP 5점)

평가항목		배점	
1	정관에서 집중투표청구권 배제하고 있는지 여부	PP(흡쇼핑)	1.5
2	정관에 보장된 소액주주 보호내용	PP(흡쇼핑)	2.5
3	이사의 자기거래 및 최대주주와 회사와의 거래를 통제하기 위한 내부규정 마련 여부	PP(흡쇼핑)	1

⑥ 세무조사에 의한 조치 결과(흡쇼핑PP 5점)

평가항목		배점	
1	세무조사 적출사항	PP(흡쇼핑)	2.5
2	세무조사 적출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내용	PP(흡쇼핑)	2.5

※ 최근 5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사업자에 한하여 평가함.

수신료 배분의 적정성

1. 평가척도

평가항목	평가척도
수신료 배분의 적정성	-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용요금 약관' 승인시 제출된 수신료 배분 기준 준수 여부 평가

2. 세부기준

※ 평가 대상 사업자 : SO, 위성(총40점)

가. 평가 점수 배점기준

평가척도	세부기준	배점
		SO, 위성
		40점
수신료 배분 기준 준수 여부 평가	- 수신료 매출액 대비 수신료 PP 배분액 비율을 산출하여 8구간으로 나누어 평가	40

나. 배점 방식

- 전전기, 전기 및 당기의 수신료 매출액 대비 수신료 PP 배분액 비율을 산출하여, 1과 2 및 3으로 가중평균함. 가중평균에 대한 평균(M) 및 표준편차(SD)를 산출하여 8구간을 나누어 점수를 배점함.

채널공급계약시 선정기준 적정성

1. 평가척도

평가항목	평가척도
채널공급계약시 선정기준 적정성	-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의 신규채널 계약이나 기존 채널 재계약시 객관적 선정기준 유무 및 선정기준의 적정성

2. 세부기준

※ 평가대상 사업자 및 배점 : SO, 위성(총30점)

○ 채널공급계약시 선정기준 적정성(30점)

평가척도	세부기준	배점
		SO, 위성
		30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의 신규채널 계약이나 기존 채널 재계약시 객관적 선정기준 유무 및 선정기준의 적정성	채널공급 계약시 문서화된 선정기준의 유무	5
	채널공급 선정기준의 공개여부	3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여부	5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여부	2
	가입자 채널평가 결과 반영 여부	3
	방송위 제재현황 반영 여부	2
	각종 상벌 반영 여부	1
	채널선정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4
	무료계약 여부	5

상품 선정기준의 적정성

1. 평가척도

평가항목	평가척도
상품 선정기준의 적정성	- 상품(납품업자) 선정시 객관적 선정 기준 유무 및 선정기준의 적정성

2. 세부기준

※ 평가대상 사업자 및 배점 : 홈쇼핑PP(총30점)

○ 상품(납품업자) 선정시 객관적 선정 기준 유무 및 선정기준의 적정성 (30점)

평가척도	세부기준	배점
		SO, 위성
		30점
상품 선정시 객관적 선정 기준 유무 및 선정기준의 적정성	상품(납품업자) 선정기준의 명문화 여부	4
	장애인 등 소외계층 배려 기준 유무 및 준수 여부	3
	중소기업 배려 기준 유무 및 준수 여부	5
	농어민 배려 기준 및 유무 및 준수 여부	3
	복수 업자간 공정 경쟁 유도 기준 유무 및 준수 여부	4
	납품업자에게 선정기준 공개 여부	3
	납품업자의 친인척인 임직원이 선정에 관여하는 것을 배제하는지 여부	2
	납품업자 제출 문서의 사실 여부 확인 절차 유무	2
	상품 선정과 관련된 임직원 윤리강령 조항 유무	2
	납품업자 불만 처리 창구 유무	2